

#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·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. 6. 30. 만료 예정임에 따라 위·수탁기간 연장(재계약)과 관련하여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·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재계약 근거 및 필요성

- 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
  -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- 필요성
  - 위탁업무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이므로,
  -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이 용이

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

#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: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-5

- 시설규모(생태주택관 및 민박동)
  - 부지면적: 4,000m<sup>2</sup>
  - 연 면 적: 749.66m<sup>2</sup> (주택관 435.52 / 민박동 314.14)
  - 건축면적: 748.35m<sup>2</sup> (주택관 403.12 / 민박동 345.23)
- 주요시설
  - 생태주택관: 농특산물판매장, 세미나실, 휴게실 등
  - 민 박 동: 1개동(4가구)
- 위치도

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재계약 기간: 2026. 7. 1. ~ 2029. 6. 30.(3년)
- \* 현재 2023. 7. 1. ~ 2026. 6. 30. (3년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 수탁자 재계약: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(대표 김정하)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해당없음

##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)
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평창군 직영도 가능하나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
  - 현재 수탁기관은 시설관리 및 이용객 응대, 안전관리 등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
- 경제적 효율성
  - 수탁기관이 대상 시설 내에 상시 관리하고 있어,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군 직영의 원거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음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,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
  - 수탁기관은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지역 주민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함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 - 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용이
  - 운영관리·사업성과가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표를 구성하고,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 부여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 -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이 용이

#### 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B등급(86점): 재계약 추진 타당
  -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, 시설관리,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서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보임
  - 마하생태관광지 및 어름치마을과 연계한 체험·숙박 패키지 운영, 야간박쥐탐사대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

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운영현황

- 관리인력: 3명(마을 위원장, 사무국 2명)

\* 여름철 성수기 청소 인력 추가 확보 운영

- 운영성과(23. 07. ~ 25. 12.)

연도별	1년차 (23.07.~24.06.)	2년차 (24.07.~25.06.)	3년차 (25.07.~12.)
이용객수(명)	1,746	2,290	1,361
매출액(백만원)	46	55	35

○ 관련자료

- 붙임: 관계규정 발취

[붙임]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#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□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9조(위탁관리)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.